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정	2005. 10. 5	조례 제 663호
개정	2006. 1. 11	조례 제 791호
	2006. 4. 12	조례 제 799호
	2006. 10. 13	조례 제 831호
	2006. 12. 29	조례 제 856호
전문 개정	2007. 7. 1	조례 제 884호
개정	2007. 12. 17	조례 제 910호
전문 개정	2008. 12. 29	조례 제 966호(제명 개정)
개정	2009. 6. 26	조례 제 1039호
	2009. 12. 29	조례 제 1059호
	2010. 2. 23	조례 제 1070호
	2010. 8. 2	조례 제 10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내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구, 읍·면·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속기관 : 농업기술센터, 처인구보건소, 기흥구보건소, 수지구보건소
- 사업소 : 정보문화기획단, 건설사업단,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개정 2009. 6. 26, 2009. 12. 29>
- 하부행정기관 :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

동, 상현2동, 성복동 <개정 2010. 8. 2>

- 제3조(국장 및 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보건소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읍·면·동장의 직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시 본청,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시 본청

제5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산업정책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6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공보관, 대외협력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7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는 행정과, 정책기획과, 재정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종무, 의전, 복무, 인사, 조직관리, 선거, 민방위 등에 관한 사무
2.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예산편성, 예산집행, 법무, 통계, 시의회에 관한 사무
3. 지출·계약,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무
4. 지방세, 자금관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무
5. 행정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무

제8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과, 복지위생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대책 수립·조정

2. 주민등록, 민원행정에 관한 사무
3.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장묘문화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4. 여성복지,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
5. 문화 및 문화재 보전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09. 12. 29>
6. 관광에 관한 사무 <개정 2009. 12. 29>
7. 체육행정, 청소년육성 및 수련시설에 관한 사무

제9조(산업정책국에 두는 과) ① 산업정책국에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 휴양과, 자원관리과를 둔다.

- ② 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기업지원, 에너지관리 및 노사지원 등에 관한 사무
2. 농업생산 및 육성, 농수산물 유통, 축산, 수산에 관한 사무
3. 산림에 관한 사무
4. 청소, 재활용 및 환경시설관리에 관한 사무

제10조(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공원과를 둔다. <개정 2009. 12. 29>

-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도시개발, 구획정리, 지적에 관한 사무
2.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무
3.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4.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무 <신설 2009. 12. 29>

제11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교통과, 도로과, 하천과, 환경과, 재난안전과를 둔다.

-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중교통, 운수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무
2. 도로, 교량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3. 하천에 관한 사무
4. 환경보전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무
5.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에 관한 사무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2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센터에 두는 과) ① 센터에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를 둔다. <개정 2009. 12. 29>

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리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무
2.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의 보급에 관한 사무
3. 농촌청소년 및 농업후계자 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무
4.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5. 농업경영개선 지도에 관한 사무
6. 농·축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에 관한 사무
7. 농작물 병충해 예방·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8.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9.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10. 농촌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사무

제15조(상담소의 설치) ①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절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제1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 ·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소장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과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개정 2009. 12. 29>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 행정과를 둔다. <신설 2009. 12. 29>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2. 29>

③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2. 29>

제4장 사업소

제19조(설치)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20조(한시기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기구로 건설사업단을 설치한다.

제2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 · 단장 및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掌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문화기획단 <신설 2009. 6. 26, 개정 2009. 12. 29>

- 가. 도서 및 각종 기록물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무
- 나.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무
- 다.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협조에 관한 사무
- 라.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마. 기타 운영에 관한 사무
- 바. 도서관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사.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
- 아.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에 관한 사무
- 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부업알선에 관한 사무
- 차. 여성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무
- 카.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의 전개에 관한 사무
- 타.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2. 건설사업단 <개정 2009. 12. 29>

- 가. 용인경량전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
- 나. 민간자본유치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사무
- 다. 건설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
- 라. 용인경량전철사업 시설인수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마. 기홍호수공원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
- 바. 용인시민체육공원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
- 사. 용인-문화방송(MBC) 드라마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
- 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규모 공공용 건축물의 공사 시행
- 자.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규모 공공용 건축물의 공사 지도·감독
- 차. 기타 시장이 지시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무

3. 상수도사업소 <개정 2009. 12. 29>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나. 상수도 시설 확충에 관한 사무

다. 송·배수관 유지 관리 및 누수 방지에 관한 사무

라. 정수의 생산·공급 및 수질시험에 관한 사무

마.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4. 하수도사업소 <개정 2009. 12. 29>

가. 하수처리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무

나. 용인하수처리장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다. 분뇨·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무

5. 차량등록사업소 <개정 2009. 6. 26>

가. 자동차의 등록 및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에 관한 사무

나. 자동차 검사지시에 관한 사무

다. 자동차 등록 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라. 이륜차 등록에 따른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

마.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관한 사무

바. 건설기계의 등록 및 조종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사. 차량 및 기계 장비 등록 관련 취득세·등록세 업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9. 6. 26>

제5장 하부 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구청장)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과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구에 두는 과)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산업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제2절 읍·면·동

제26조(설치) ① 법 제3조 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직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업무, 통·리·반장 조직운영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는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9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003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97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전문개정 2010. 8. 2]

제30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 시한은 별표 8과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 11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12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3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복지업무”를 “주민생활지원업무”로 한다.

부칙 <2007. 7. 1 조례 제8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중 “총무 담당간사”를 “총무 및 민방위 담당간사”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3호 내지 제4호를 동조동항 제2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②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35인 이내”를 “40인 이내”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지방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도시 4개”를 “자치행정, 주민생활지원, 산업정책, 도시주택, 건설교통 5개”로 한다.

③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1조 중 “경제환경업무 담당”을 “산업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용인시 주택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도시국장”을 “주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⑥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산업정책국장”으로 한다.

⑦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기술지도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각각 한다.

제15조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한다.

⑧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한다.

⑨ 「용인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다목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을 각각 “공보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산업정책국”으로, 동호나목 중

“건설도시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동호다목 중 “도시환경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로, 동호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동호다목 내지 라목을 동호라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교통국에 속하는 사항

⑩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내무위원장”을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제3조의2제1항 중 “내무분과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한다.

⑪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시환경사업소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동조 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산업정책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7. 12. 17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례 제9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22명”을 “23명”으로 하고,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시행 규칙」”을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6. 26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9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3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부칙 <2010. 8. 2 조례 제1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행정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 중 “23명으로 하며”를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로 한다.

[별표 1] <개정 2009. 6. 26, 2009. 12. 29>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재지(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용인시청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삼가동 556)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용인시 처인구 매봉로 238(원삼면 사암리 858-1)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삼가동 556)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용인시 기흥구 구갈6길 1(구갈동 352-3)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용인시 수지구 신촌2길 8(풍덕천동 1080-11)	
용인시 정보문화기획단	공연예술과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삼가동 556)
	여성회관	용인시 수지구 신촌1길 13(풍덕천동 1086)
	동부도서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45(역북동 504-1)
	서부도서관	용인시 수지구 신촌1길 23(풍덕천동 1088)
용인시 건설사업단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삼가동 556)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용인시 처인구 중앙로 94(김량장동 286)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5-3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51(역북동 365-2)	
용인시 처인구청	용인시 처인구 중앙로 94(김량장동 286)	
용인시 기흥구청	용인시 기흥구 구갈6길 17(구갈동 355)	
용인시 수지구청	용인시 수지구 수지대로 333(풍덕천동 720)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기 관 명	소 재 지	관할구역
처 인 구	용인시 처인구 수포길 214(포곡읍 삼계리 588-5)	포곡읍 일원
	용인시 처인구 파담2길 65(모현면 갈담리 309)	모현면 일원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38-1	남사면 일원
	용인시 처인구 남이로 26(이동면 송천리 750-3)	이동면 일원
	용인시 처인구 원삼로 497(원삼면 고당리 88-1)	원삼면 일원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95-3	백암면 일원
	용인시 처인구 서촌4길 3(양지면 양지리 701-9)	양지면 일원
	용인시 처인구 선정길 11(김량장동 303-3)	김량장동, 남동 일원
	용인시 처인구 까치고개길 20(역북동 518-4)	역북동, 삼가동 일원
	용인시 처인구 처인대로 720(유방동 475-4)	유방동, 고림동 일원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1078(마평동 533-8)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일원
	용인시 기흥구 신구1길 13(신갈동 60-8)	신갈동 일원
	용인시 기흥구 강남마을길 1(구갈동 578)	구갈동 일원
기 흥 구	용인시 기흥구 금화길 78(상갈동 472)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일원
	용인시 기흥구 한일1길 7(공세동 388-23)	공세동, 고매동 일원
	용인시 기흥구 서령로 243(서천동 335-2)	농서동, 서천동 일원
	용인시 기흥구 향교길 23(언남동 342-15)	언남동, 청덕동 일원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05(마북동 181-2)	마북동 일원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7	동백동, 중동 일원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20(상하동 461)	상하동 일원
	용인시 기흥구 은하수길 25(보정동 1266-4)	보정동 일원

기 관 명	소 재 지	관할구역
수 지 구	용인시 수지구 토월1로 1(풍덕천동 701-1)	풍덕천동 일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3로 192(풍덕천동 1051-2)	풍덕천동 일원
	용인시 수지구 신봉로 6(신봉동 898)	신봉동 일원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22(죽전동 1070-9)	죽전동 일원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51(죽전동 1003-43)	죽전동 일원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22(동천동 176-4)	동천동, 고기동 일원
	용인시 수지구 상현1길 48(상현동 839)	상현동 일원
	용인시 수지구 만현길 42(상현동 66-2)	상현동 일원
	용인시 수지구 효자길 3(성복동 285-8)	성복동 일원

[별표 2]

농업기술상담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담 당 구 역
도시농업상담소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91 (중동 676-6)	기흥구 · 수지구 관할 동지역
중 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까치고개길 20 (역북동 518-4)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북 부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까치고개길 20 (역북동 518-4)	포곡읍, 모현면
남 사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38-1	남사면
이 동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남이로 26 (송전리 750-3)	이동면
원 삼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길 5 (고당리 35-11)	원삼면
백 암 상 담 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48-4	백암면

[별표 3]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제16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처 인 구 보 건 소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삼가동 556)	처 인 구 일 원
기 흥 구 보 건 소	용인시 기흥구 구갈6길 1(구갈동 352-3)	기 흥 구 일 원
수 지 구 보 건 소	용인시 수지구 신촌2길 8(풍덕천동 1080-11)	수 지 구 일 원
처인구 포곡읍 지소	용인시 처인구 수포길 214(포곡읍 삼계리 588-5)	포 곡 읍 일 원
처인구 모현면 지소	용인시 처인구 처인대로 155(모현면 왕산리 804-3)	모 현 면 일 원
처인구 남사면 지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88-4	남 사 면 일 원
처인구 이동면 지소	용인시 처인구 남이로 26(이동면 송전리 750-1)	이 동 면 일 원
처인구 원삼면 지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로 497(원삼면 고당리 88-1)	원 삼 면 일 원
처인구 백암면 지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95-3	백 암 면 일 원
처인구 양지면 지소	용인시 처인구 교동4로 16(양지면 양지리 364-1)	양 지 면 일 원
원암 보건 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 242-15	원암1,2,3리, 전목1,2,3리 전궁1,2리
아곡 보건 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460-5	아곡1,2리, 완장1,2,3리 창1,2,3리
죽능 보건 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로 717(원삼면 죽능리 산15)	죽능1,2,3,4,5리 목신1,2,3,4리
대대 보건 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상리말길 47(양지면 대대리 423-1)	대대1,2,3,4리, 정수리 주부1,2,3,4,5리
백봉 보건 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213-3	백봉1,2,3,4,5리 고안1,2,3리
장평 보건 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장평리 397-6	장평1,2,3리, 금삼1,2리 용천1,2,3리, 옥산1,2,3,4리 석천1,2,3리
가창 보건 진료소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 228-3	가창1,2,3,4,5리
고매 보건 진료소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822(고매동 692-1)	고매1,2,4통 농서1,2통
공세 보건 진료소	용인시 기흥구 공세큰말길 6(공세동 281-10)	고매3,5,6,7통, 공세1,2,3통
고기 보건 진료소	용인시 수지구 이종무로 237(고가동 103)	고기1,2,3통

[별표 4]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23조 관련)

구명	관할구역	비고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영덕동, 언남동, 마북동, 청덕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수지구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별표 5]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0조 관련)

구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78% 이상	20% 이내	2%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읍·면·동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개정 2009. 6. 26, 2009. 12. 29, 2010. 2. 23, 2010. 8.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5% 이내	7% 이내	25% 이내	32% 이내	25% 이내	9.5% 이상

※ 비고 : 읍·면·동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 공무원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1.3% 이내	7% 이내	12% 이내	18% 이내	38% 이내	23.7% 이상

※ 비고 : 읍·면·동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2% 이내	88% 이상

※ 비고 : 읍·면·동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 이내	80% 이내	13% 이상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7] <개정 2009. 6. 26, 2009. 12. 29, 2010. 8.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1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총 계	2,003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	-	-	-	-
일반직 계	1,668			-			
2급	1	1	-	-	-	-	-
4급	16	5	1	3	4	3	-
5급	105	31	3	6	13	21	31
6급 이하 계	1,546			-			
별정직 계	13	-	-	-	-	-	-
5급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계	13			-			
연구직 계	3			-			
연구관	-	-	-	-	-	-	-
연구사 계	3			-			
지도직 계	34	-	-	-	-	-	-
지도관	4	-	-	4	-	-	-
지도사 계	30			-			
기능직 계	284			-			

[별표 8]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33조 관련)

관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 (명)	운영시한	비고	
		직 종	직 급				
총 계		총 계		30			
		일반직	4 급	1			
			5 급	1			
			6 급	7			
			7 급	8			
			8 급	6			
			9 급	6			
		기능직	9 급	1			
본 청	정책기획과	일반직	5 급	1	2010년 3월 31일까지		
사 업 소	건설사업단	일반직	4 급	1	2010년 3월 31일까지		
			6 급	7			
			7 급	8			
			8 급	6			
			9 급	6			
		기능직	9 급	1			